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0199	임이자의원	2024.06.07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0866	김영진의원	2024.06.25	
2200980	한정애의원	2024.06.26	
2201208	송옥주의원	2024.07.01	
2202652	박홍배의원	2024.08.08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3357	이수진의원	2024.08.29	
2204045	송옥주의원	2024.09.13	
2206804	박해철의원	2024.12.2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3.14.)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6820		2024.12.23	
2208701	이용우의원	2025.03.06	
2205708	박해철의원	2024.11.19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9260	김태선의원	2025.03.21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2445	이용우의원	2025.08.27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2487		2025.08.28	
2213566		2025.10.13	
2213512	김소희의원	2025.10.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7.)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3611	이용우의원	2025.10.15	
2213893	박홍배의원	2025.11.04	
2213902	김주영의원	2025.11.04	
2214033	정혜경의원	2025.11.07	
2214121	강득구의원	2025.11.11	
2214132	김형동의원	2025.11.11	
2214303	김위상의원	2025.11.17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에서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뿐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좀더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함.
- 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함.
- 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원인조사를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
- 라.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함.

4. 부대의견

-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자격체계, 지원 요건을 포함한 실행체계 보완내용을 조속히 입법한다.
- 나. 고용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 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 제1항의 유해·위험 요인 확대 방안을 26년 연말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당해 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로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 중 “부상”을 “사망, 부상”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로, “결과에 따라”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해당 작업장의”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을 “위험성평가의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를 “위험성평가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56조의 제목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

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 등의”로,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 조사를”을 “원인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 로 한다.

1. 중대재해

2.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 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 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 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 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 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 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을 “근로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로 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6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2,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 제2호의2 및 제5항제1호(제36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 제3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 ② 제49조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u> <u>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u> <u>1. 안전보건관리체제</u> <u>2. 산업재해 발생 현황</u> <u>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당해 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u> <u>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u> <u>5.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u> <u>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u>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생략)

<신설>

<신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

정한다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

니 된다.

③ (생 략)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 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

-----사망, 부상-----

-----수준-----
인지를 결정하고-----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포함
하여-----
-----위한 개
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

② -----위험성평가-----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
의-----.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 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

⑥ 위험성평가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① -----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중대재해

2.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중대재해 등이-----

④ -----중대재해등의-----
-----제1항 및 제2항에-----원인조사를-----

<신 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중대재해등이-----

-----.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 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
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설>

4. ~ 13. (생략)

<신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2조(비밀 유지)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4. ~ 13.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

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0조(벌칙) -----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 8.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신설>

3. ~ 8.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4항-----

-----중대재해등의-----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

문가의-----

3. ~ 8.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 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 8. (현행과 같음)

⑤ -----

1. -----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 16.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신설>

-----제36
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2. ~ 16. (현행과 같음)

⑥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3. ~ 18. (생 략) ⑦ (생 략)	<u>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 .</u> <u>보존하지 아니한 자</u> 3. ~ 1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